

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

□ 폐 지 사 유

-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”이 제정·공포되어 ‘98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
- 현행 조례에서 정한 내용 대부분이 상위법령과 중복 위배되어 있고 정보공개제도 운용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운용할 경우 현행 조례를 더 이상 존손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폐지코자 함.

□ 주 요 골 자

- “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”폐지
- 본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
□ 참 고 사 항

- 관계법령 발췌
 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, 제5조
 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

○ 관계법령 전문
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(법률 제4252호, 12. 31)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(대통령령 제15498호, 1997. 10. 21)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(총리령 제695호, 1997. 11. 11)

□ 검토 의견

- 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당시 법률의 근거없이 사무관리규정 (대통령령 제13390호)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(국무총리훈령 제288호 94.3.2), 광주광역시 행정정보공개조례(제2354호 93.1.11)의 근거에 의하여 의원 입법으로 서구조례를 제정(제244호 92.10.13) 운영하여 왔으나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(제5242호 96.12.31)되어 '98.1.1 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과 서구조례의 내용이 대상, 절차, 심의 위원회 구성 등 전반 사항이 상이하고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.
-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(수수료)에 대해서는 동법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,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동법시행령 제12조 단서조항에 당해기관에 유사한 기능수행위원회가 있을 경우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에 운영 수행토록 하여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·동법시행령·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 운영 할 경우 정보공개업무 수행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봄으로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손시킬 의의가 없음이 판단되어 폐지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.